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09년 8월 5일

국무총리 한승수

국무위원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유인촌

●대통령령 제21663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제2조 중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항에 따라”로, “공표하고자 하는”을 “공표하려는”으로, “정기간행물”을 “신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위원 또는 중재절차에”를 “제7항에 따라 중재위원이나 조정 또는 중재절차에”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재위원 또는 중재절차에”를 “중재위원이나 조정 또는 중재절차에”로 한다.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5조에 따른 신청방식에 위반되거나 조정절차 등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재부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1. 제척신청의 경우: 해당 중재위원 또는 직원이 속한 중재부
2. 기피신청의 경우: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재부

제8조 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를 “법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보도물의 공개)”를 “(보도물 등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 또

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피해를 입은 자는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정보도의 청구를 위하여 언론보도등의 원본이나 사본 및 언론보도등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해당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언론사는”을 “언론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언론사는”을 “언론사등은”으로, “당해 언론사가”를 “해당 언론사등이”로 한다.

제10조 중 “언론사”를 “언론사등”으로,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라”로, “방법에 의하여 이를”을 “방법으로”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①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이하 “배열전자기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1. 인터넷신문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신문의 최상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사

- 가.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최상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 나.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② 배열전자기록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사의 제목 및 제공 언론사의 명칭
2. 해당 화면에서 기사가 배열된 위치
3. 해당 화면에 최초 노출된 시각 및 삭제된 시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열전자기록의 보관의무를 지는 자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신청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등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은 중재위원회가 설치하여 운영한다.

④ 중재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전자문서의 이용·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중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이라 함은 언론사가”를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이란 언론사등이”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기간행물”을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7인의 위원”을 “7명의 중재위원”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신청을 하려면 제1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	2천만원
2. 법 제15조제3항(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발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3천만원
3. 법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3호	3천만원
4. 법 제15조제8항을 위반하여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2	3천만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보도 내용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425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제외 대상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제외 대상 규정(영 제1조의2 신설)

1)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는 전파의 신속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터넷포털 등에 의한 보도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것이므로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개인 블로그나 공공기관 또는 일반기업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은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제외함.

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 보관 의무의 구체화(영 제11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

음.

2)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각각 해당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최상위화면에 게재된 기사 등에 대하여 그 기사의 제목 및 제공 언론사의 명칭, 해당 화면에서 보도가 배열된 위치 등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보관하도록 함.

다. 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방법의 구체화(영 제12조)

1)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도록 함에 따라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은 중재위원회가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

2) 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09년 8월 5일

국무총리 한승수

국무위원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유인촌

●대통령령 제21664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인터넷신문) 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가. 취재인력을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